

전자산업발전유공자 포상

1. 목적

-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 4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1위 산업으로 부상한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에 공이 큰 전자산업인을 포상함으로써 사명감과 의욕을 고취시켜 미래성장 주도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2.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99. 10. 7, 11:30(예정)
- 장소 : 전자정보산업40주년 기념 리셉션장(인터콘티넨탈 호텔/2층그랜드 셀라던볼룸)

3. 주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4. 포상 부문 및 포상 신청기준

5. 포상종류 : 훈 · 표창

6. 포상신청

- 전자업체 : 경영자, 근로자, 공로자 부문에 신청 (외국인 포함)
- 전자산업 유관기관 · 연구소 : 공로자 부문에 한 해 신청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등

7. 포상제외

- ① 이미 받은 훈 · 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 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동종등급 서훈금지)
- ② 최근 5년이내에 훈장을 수여받고 다시 훈장추천

포상부문	신청기준	비고
경영인	다년간 전자업체를 경영하면서 전자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로서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대체, 노사화합 등 경영합리화에 공이 큰 자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에 모범이 되는자	업체별 총신청인원 (종업원기준) 300명이하 : 3명 1,000명이하 : 5명 5,000명이하 : 10명 5,000명초과 : 15명
근로자(관리직 및 기술직 포함)	전자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로서 -신시장개척,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자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	
공로자	전자업체 임원 및 전자산업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노사관계, 시장개척, 생산성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된 자(재포상금지)

- ③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 다만, 하나의 기업내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고 포상대상이 사업장 또는 그 임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및 그 임원을 말함
 - 2년전의 산재율은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1년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음
 - 중대재해, 작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체 및 그 임·직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자

※ 각급 포상 추천기관의 장은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경력조회 등을 철저히 하여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야 함

8. 포상대상자 추천심사

- 추천심사 : 정부, 학계, 언론, 연구소 등 관련기관 인사로 공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천자를 결정
- 심사기준 :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함

9.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 2통
- 공적조서 : 5통
- 이력서 : 2통
 - 최근 6개월이내 명함판 사진을 반드시 풀칠부착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10. 포상신청서 접수기간

'99. 6. 15~'99. 6. 30(본회 도착분에 한함)

11. 포상신청서 접수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총무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우)135-080
(전화 02-565-5803, 교환 201~202)

불공정한 수출입행위 조사·신고제도 안내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란?

-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 원산지를 정당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수출입물품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손상 및 변경한 경우
 -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품질 등을 허위 또는 과장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또는 고의적으로 분쟁을 야기시킴으로써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무역관련서류(선하증권 등)의 변조, 위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행위

무역위원회 활동시 좋은점

■ 간편한 절차, 신속한 처리

- 법원소송을 통한 해결에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의 한계가 있으나 무역위원회는 신속한 조사처리로 시간이 크게 절약됨

■ 신고·조사비용이 불필요함

- 신고절차에 특별히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소송과는 달리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음

■ 공개 또는 비공개 조사처리 가능

- 법원의 소송내용은 공개원칙이나 무역위원회는 신고인이 원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비공개함

무역위원회의 조치수단

■ 시정조치명령

■ 과징금부과

■ 기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는 수단

- 통관의 보류(상표권, 저작권침해시)
- 사법기관 고발 등

조사·신고자격 등

-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거래자, 생산업자, 관련조합·협회, 운송인 또는 보험업자 → 무역위원회 불공정수출입조사과

문의사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불공정수출입조사과)
- 전화 : 02)500-2598, 2599

99년 5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그간 한국과 캐나다 정부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과 1996년 2월의 2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1997년 1월 10일 양국 정부간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캐나다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1999년 1월 캐나다측으로부터 의회비준 통보를 접수함에 따라 협정규정에 의거 1999년 5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는 다른 캐나다 연방지역과 달리 별도의 연금제도를 퀘벡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정부가 퀘벡주 정부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캐나다(퀘벡주 제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파견예정인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확인 후 가입증명을 발부하게 된다.

파견근로자는 공단이 발부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캐나다의 사용자를 통해 캐나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5년간 캐나다연금보험료('99년 현재 노·

사각 3.5%)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또한,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간 상대국 국민에 대한 연금법령 적용의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캐나다인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캐나다인에 대해 지급하는 반환시금은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발효일 이후에 납부된 보험료에 한정되며, 캐나다 국적인이어야 한다.

협정시행 이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도 캐나다 연금기관에 비치된 국민연금 급여청구서에 의거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연금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이외에도 미국 및 영국과 그간 각각 3차례의 정부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사회보장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네덜란드, 독일 및 프랑스와는 1~2차례의 실무회담을 가진바 있다.

이외에도 이태리, 호주,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 많은 국가들과 협정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문의처 : 전경련 경제협력팀 나형근

(Tel. 3771-0357)

강화된 벤처 육성책

최근들어 벤처기업은 정부를 비롯 업계 개인투자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실업해소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란 인식하에 적극적인 진흥책을 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지난 1년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다듬어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법인설립 조건 완화, 실험실공장 허용,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임직원 겸직등 벤처기업관련 규제철폐 및 우대조치를 담고 있다. 중기청은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한국벤처투자조

합을 설립해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의 지원책을 계속 펼 계획이다.

▲ 예비창업자 벤처기업평가 확인제도=회사설립 전단계에서 예비창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따라 회사설립후 벤처기업확인서를 즉시 발급받게 된다.

▲ 벤처법인 설립자본금 2,000만원으로 하향=벤처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립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상법상 절차와 같으나 관할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학·연구소내에 공장설치 허용=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 공장등록을 부여한다. 교수·연구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을 후 기업설립 및 연구·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시군구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국 9,950여개 실험실중 상당수가 벤처기업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치 허용=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 기업은 도시형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해 건축물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상 건축물 용도 제한을 배제해 준다. 현재 창업 보육센터는 총 80개에 238개업체가 입주해 있다.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허용=현직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대표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된다. 국공립 대학 및 연구원 등 공무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다.

▲ 외부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부여=회사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던 스톡옵션을 외부전문가 및 대학연구기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교수·연구원과 개업신고한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중기청등록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그리고 대학·연구법인이다.